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485

발의연월일: 2024. 9. 2.

발 의 자: 박희승·한정애·이건태

위성곤 • 서영교 • 김원이

강유정 • 이개호 • 윤준병

박홍배 • 조계원 • 전진숙

의원(12인)

제안이유

쌀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가 중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우리 농업의 주요 품목으로 농가의 생산기반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임.

그러나 최근 쌀값이 45년 만의 최대치로 폭락하고 2022년 농업소득은 전년(1,296만원) 대비 26.8%가 폭락한 948만원에 그쳐 쌀소득이 20여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는 등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고통이 컸음.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시장격리 등 여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쌀값은 몇 개월째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실제 올해 8월 25일 기준, 쌀값은 17만 6천원대까지 하락해 2022년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

큼 임시방편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명시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포함하며,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특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며,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의무수입쌀의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동시에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현행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 식량안보, 식량자급률 제고, 농업의 지속가능을 명시함(안 제1조).
- 나. 공공비축양곡을 미곡 밀 콩으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양곡수급계획의 내용에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용도별 수입· 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양곡의 적정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명 시함(안 제3조).
- 라.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 실태 점검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3 신설).
- 마. 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 4 신설).
- 바. 의무수입양곡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양곡 관리를 강화함(안 제13조).

- 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 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6조).
- 아.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함(안 제16조의3 신설).
- 자. 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의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타작물 재배지원 의무화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4 신설).
- 차.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 근거와 미곡 공급량의 선제적 조절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5·제16조의6 신설).
- 카. 미곡 외의 양곡(밀, 콩 등)의 유통업에 대한 육성 근거를 마련함 (안 제22조).
- 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법률 제 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확보함으로써"를 "확보하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을 "미곡·밀·콩" 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정부관리양곡"을 "양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년 정부관리양곡"을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한다"를 "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 3.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가공용, 주정용, 사료용, 해외원조용 등 용도별 수입·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 중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를 "제16조의3에 따른 양

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판매가격은"을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9조의3 및 제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태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이라 한다)에 대 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 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 원할 수 있다.
-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의 매입, 보관, 가공, 공급 등 수급을 종합적 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용 · 관

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매입·판매가격"을 "매입·판매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판매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식량자급률의 증진 및 양곡 수급관리를 위한 미곡·밀·콩 등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수입양곡(「호주 정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른 의무수입양곡을 말한다)이 국내 양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료용, 해외원조용으로 공급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매

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수입양곡의 국내 방출이 국산 양곡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양곡 생산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출 물량 및 시기 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무수입양곡 중 일반판매용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양곡의 수확기인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곡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국내에 방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매입·판매 물량의 산정, 매입·판매의 시기·절차"를 "매입·판매의 절차"로, "사항과 생산자단체대표 등과의 협의기구 구성·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을 "사항은"으로 한다.

- 3.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

업협동조합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 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 부관리양곡의 판매

제16조의2 중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의지급대상자 등으로"로 한다.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 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 곡수급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3.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시기 및 매입·판매가격
-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면적의 조정
-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

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정책관
-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산자단체 대표
-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

품부장관은 미곡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논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논타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재배기술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의5(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 수요, 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기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통계나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 · 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6(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 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 게 하는 사업
 -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 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자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제22조의 제목 중 "미곡유통업"을 "양곡유통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 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특별

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양곡"으로,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을 "양곡 매입 및 매입한 양곡"으로, "종
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종합적인 양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
축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미
곡의"를 각각 "양곡의"로, "미곡종합처리장 등 미곡"을 "미곡종합처리
장, 콩종합처리장 등 양곡"으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수 있다.

-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 개발
-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 양곡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국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
- 2.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개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3.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통계나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양곡의 효율	제1조(목적)
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	
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	
을 안정적으로 <u>확보함으로써</u>	<u>확보하고 생산</u>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u>자의 이익을 보호하며 양곡의</u>
로 한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u>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을 제고</u>
	하고 농업의 지속가능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공공비축양곡"이란 양곡부	3
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	
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하여 비축하	
는 <u>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u>	<u>미곡·밀·콩</u>
<u>는 양곡</u> 을 말한다.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	제3조(양곡의 수급계획 수립) ①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은 <u>매년 정부관리양곡</u>의 수급 계획(이하 "양곡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② 양곡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생 략)
- 3. 공공비축양곡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4. (생략)

- ③ (생 략)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 항에 따라 확정된 양곡수급계 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제5조(양곡 매입가격 등의 결정)

제16조
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양곡
②
1. • 2. (현행과 같음)
3. 공공비축양곡과 수입양곡의
가공용, 주정용, 사료용, 해외
원조용 등 용도별 수입・운용
및 적정 재고량 관리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
정한 자급목표 중 양곡에 관
<u>한 사항</u>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u>하고, 지체 없</u>
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 ① ------조제1항에 따라 양곡을 매입할 때에는 그 매입가격과 매입량 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다.
- ② (생 략)
-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 의 판매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③ ~ ⑤ (생 략) <신 설>

-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 ②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판매가격과 판매시기는 제1 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9조의3(정부관리양곡 보관 실 대 점검 등)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보관시 설(이하 이 조에서 "보관시설" 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보관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

<신 설>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 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점검 결 과를 공표할 수 있다.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 관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 려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렁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4(정부관리양곡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의 매입, 보관, 가공, 공급 등 수급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 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용) ①・② (생 략)

가격은 매입・판매지역의 당시 시장가격으로 한다.

<신 설>

④ (생 략)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 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사 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 한다.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 제10조(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 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 ③ ------매입・판매 물량은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 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고, 매입・판매가격-----

> ④ 식량자급률의 증진 및 양곡 수급관리를 위한 미곡・밀・콩 등 공공비축양곡의 비축・운용 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기업 예산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지출한 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13조(수입양곡의 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 수입양곡(「호주 정부, 중화인 민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 타이왕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협정」에 따른 의무 수입양곡을 말한다)이 국내 양 곡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 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료용, 해외원조 용으로 공급하는 등 대책을 수 립하여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 워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의무수입양곡의 국내 방출이 국산 양곡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양곡 생산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출 물량 및 시기 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양곡수급 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 2. (생략)

<u><신 설></u>

- ②・③ (생 략)
- ④ 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항에 따른 의무수입양곡 중 일 반판매용 또는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양곡의 수확기인 경우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곡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국내에 방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수급 관리) ① ------

- 1. · 2. (현행과 같음)
- 3. 선제적 수급조절 계획
- ②·③ (현행과 같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 상 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6 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수 있다.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양 곡의 생산량 및 수요량 추정의 방식, <u>매입·판매 물량의 산정,</u> <u>매입·판매의 시기·절차,</u> 매입 물량의 보관 등 매입 또는 판 매에 필요한 <u>사항과 생산자단</u> 체대표등과의 협의기구 구성· 운영 및 협의 절차에 관련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 1.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등을 통해 해당 연도에 생산되는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매입. 이 경우 매입가격은 공공비축미곡의 매입가격으로 한다.
- 2. 미곡의 가격이 제16조의3에 따른 양곡수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 상으로 폭등하거나 폭등이 우려되는 경우: 정부관리양곡의 판매

⑤
<u>매입·판매의 절차</u>
<u>사항은</u>

정한다.

⑥·⑦ (생 략)

제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지배면적 관리)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미곡을 매입한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대표등과 협의하여 미곡을 재배하고 「농업소득의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자에게 미곡 재배면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⑥·⑦ (현행과 같음)
제	16조의2(가격안정을 위한 미곡
	재배면적 관리)
	<u>「농업·농촌</u> 공
	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
	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
	른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자 등으로
제	16조의3(양곡수급관리위원회)
	①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
	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
	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u>둔다.</u>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2. 제16조제2항에 따른 미곡수 급안정대책의 수립 및 시행
- 3.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 른 양곡의 매입·판매여부, 매입·판매물량, 매입·판매
- 4. 제16조의2에 따른 미곡 재배 면적의 조정
- 5. 그 밖에 이 법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양곡의 수급안정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식량

 정책관
- 2. 기획재정부 민생경제정책관 3.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 측본부장

⑤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생 산자단체 대표
- 2. 양곡 수급과 관련이 있는 유 통인단체 및 소비자단체 대표
- 3. 학계, 연구계 등에서 양곡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4(미곡의 수급안정 및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 ① 농 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구 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 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

<신 설>

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와 연계하여 벼 및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작물(이하 "논타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면 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논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시행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 동덤숙산식품무상관은 돈타 작물의 재배지원을 위해 생산 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 로 지원, 재배기술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논타작물 재배지원 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타 작물 재배지원 계획과 그 추진 실적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신 _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논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16조의5(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운용) ①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미곡의 효율적인 수 급관리를 위하여 미곡의 생산, 수요, 재고 등 수급과 관련된 통계와 관측자료 등을 체계적 으로 수집, 분석, 관리하기 위 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용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 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통계나 자료의 입력 또 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장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시스템 의 구축・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미곡수급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의6(미곡의 가격안정을 위한 선제적 수급조절)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은 당해연도 미곡의 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미곡 공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농업협동조합등에게 당해연 도에 생산된 미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하는 사업
 - 2. 제1호에 따라 미곡을 매입하는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판매손실을 보전하는 사업
 - 3. 농업협동조합등과 미곡 생산

 자간의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

제22조(미곡유통업의 육성) ① 농 제2 립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유 통구조개선・품질향상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생산자로부터의 미곡 매입 및 매입한 미곡의 건조・선별・보관・가공・판매 등 종합적인 미곡의 유통기능을 담당하는 미곡유통업을 육 성하여야 한다.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은 농업 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u>미곡의</u> 유통기능을 능률 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 되는 자에게 <u>미곡종합처리장</u> 등 미곡을 건조·보관·가공· 유통·판매하는 시설의 설치 및 <u>미곡의</u> 매입에 필요한 자금 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 자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 략)

∥22조(<u>양곡유통업</u> 의 육성) ① <u>농</u>
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
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은
양곡
<u>양곡 매입 및 매입한</u>
양곡
종합적인 양곡의 유통
기능을 담당하는 양곡유통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
방자치단체장
<u>%</u> }
<u>곡의</u>
미곡종합처리장, 콩종합처
미곡종합처리장, 콩종합처 리장 등 양곡
<u>리장 등 양곡</u>
<u>리장 등 양곡</u>
<u>리장 등 양곡</u>

<신 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제22조의2(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의 수요 개발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민의 식생활 개선 및 양곡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 2. 국민의 양곡 기호 변화에 따른 양곡의 새로운 수요 개발
 - 3.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를 위한 사업
 - 4. 그 밖에 양곡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산 양곡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국 산 양곡을 사용하는 기업에 대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 원할 수 있다.
 - 1. 국산 원료의 구매자금
- 2. 국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개 발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자금 제36조(과태료) ① -----

부과한다.	
<u><신 설></u>	1.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u><신 설></u>	2.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따르지
	<u>아니한 자</u>
<u><신 설></u>	3. 제16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통계나 자
	료의 입력 또는 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u>1.</u> ~ <u>6.</u> (생 략)	<u>4.</u> ~ <u>9.</u> (현행 제1호부터 제6
	호까지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